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538 2017. 1. 19.(목) 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7년 1월 6일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월 19일

(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: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)

가. 제안이유

○ 「환경분쟁조정법」제7조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삭제하는 등 위원회 구성사항을 변경하고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을 우리 도 행정기구 직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O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(안 제2조)
- O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변경(안 제2조)
- O 위원회 보궐위원 임기 삭제(안 제2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경형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○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인 「환경분쟁 조정법」과 우리도 행정기구 직제에 맞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인 「환경분쟁 조정법」제7조제2항은 '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'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바이오환경국 업무는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차후에 분장사무가 변경 되더라도 위원회 구성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구성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

-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「환경분쟁조정법」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삭제하는 등 위원의 구성사항을 변경하고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을 우리 도 행정기구 직제에 맞추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없 음"
- 5. 토 론 요 지: "없음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「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538호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15명 이내"를 "20명 이내"로, "행정부지사"를 "환경관련__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"로, "바이오환경국장"을 "환경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행 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충청북도 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-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 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20명 이내 ---------- 환경관련 업무를 성하고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, 부위원장은 바이오환경국장으로 관장하는 부지사, -----하다. ----- 환경관련 업무를 관장하 는 국장 ----. ②~③ (생략) ②~③ (현행과 같음)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<u>한</u>다.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【환경분쟁 조정법】

- 제7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.
 -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.
 -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【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】

- 제4조(부지사)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"도지사"라 한다)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.
 -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 - 1.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
 - 2.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·감독
 - 3.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 ·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 - 1.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 회의 참석
 - 2. 의회・정부・국회・정당・사회단체 등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
 - 3. 도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
 - 4. 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
 - 5.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 · 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제13조(바이오환경국) 바이오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 - 12.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

【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】

제13조(바이오환경국에 두는 과)

- ⑤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3. 4. 25>
- 47. 환경분쟁조정업무